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5년 11월 14 일

나. 회부일자 : 2005년 11월 14 일

3. 제안 이유

- 「바이오토피아 충북」조기실현을 위해 첨단산업육성 지원사업
을 추가하고, 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및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첨단산업육성 자문기구인 첨단산업육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첨단산업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과제 공모사업을 첨단산업
신기술 연구 개발사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개정
(안 제2조 1항 1호)
- 첨단제품의 개발 단계별 평가·시험 비용지원 신설(안 제2조 1항 7
호)
- 바이오우수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 바이오상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신설(안 제2조 1항 8호)

-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근거 신설 (안 제2조 제2항)
- 제2조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 근거 신설 (안 제2조 제3항)
- 인사위원회 구성을 90인 이내 → 30인 이내 개정(안 제5조)

5. 검토의견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바이오토피아 충북」 조기실현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 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장·단점 비교 및 전문기관의 선정 방법
- 위탁 시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및 연간 소요액 및 소요경비 산출 근거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것
-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0인에서 30인으로 대폭 조정하여 6개 분과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로 축소 조정하여 운영할 경우 첨단산업의 특성상 매우 섬세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30명의 자문위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